#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정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86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5.

발 의 자:유정주·김종민·도종환

맹성규・박재호・박 정

서동용・신동근・조승래

최인호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제영화제는 국내에서 1990년대 중반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한국 영화의 세계화와 지역경제 부양, 그리고 영화 문화의 다양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음.

그럼에도 현행법은 국제영화제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체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영화제 개최 전반에 갖가지 혼란이 발 생하면서 크게 격상된 한국영화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가는 역할 수 행도 난관에 봉착해 있음.

이에 국제영화제가 영상문화·산업 활성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경제적·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(안 제28조의5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장제4절에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5(국제영화제)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· 도는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국내외 영화 초청·상영 관련 지원
- 2. 국내외 영화 제작 지원
- 3. 국내외 영화 부문별 시상 지원
- 4. 지역 영상문화·산업 및 경제발전
- 5.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
- 6. 그 밖에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영화제의 개최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- ③ 국제영화제의 개최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8조의5(국제영화제) ① 다음
	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
	여 시·도는 국제영화제를 개최
	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
	<u>수 있다.</u>
	1. 국내외 영화 초청·상영 관련
	<u>지원</u>
	2. 국내외 영화 제작 지원
	3. 국내외 영화 부문별 시상 지
	<u>원</u>
	4. 지역 영상문화·산업 및 경제
	<u>발전</u>
	5. 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
	영지의 관광자원 활용
	6. 그 밖에 해당 시·도의 조례
	로 정하는 사항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
	제영화제의 개최·운영에 필요
	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
	<u>조할 수 있다.</u>
	③ 국제영화제의 개최·운영에
	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
	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

#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